

## 보고안건

연번	유형	안건명	제안부서
1	예산전용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2	예산전용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3	예산전용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보건의료정책과
4	예산전용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예산 전용 보고	건강증진과
5	예산전용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예산 전용 보고	질병관리과
6	예산전용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예산 전용 보고	질병관리과
7	예산전용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전용 보고	보건환경연구원
8	예산전용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전용 및 변경 보고	어린이병원
9	예산전용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사무관리비) 예산 전용 보고	은평병원
10	예산전용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시설비) 예산 전용 보고	은평병원
11	예비비	은평구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	은평병원
12	정관개정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공공보건의료재단

## 시민건강국

# 1.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응급의료지원단 설치·운영 등)
- 서울시 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 3559, '19.1.28.)
- 보건복지부 「2018~2022년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응급의료과-7133, '18.12.28.)
  - 지방정부의 응급의료체계 관리 권한과 책임 강화 (지자체의 응급의료 기획 및 예산 조정 권한 강화)

## □ 사업개요

- 명 칭: 서울시응급의료지원단
- 기 간: '19.01~ '20.12.31.(2년)
- 구 성: 총 16명(단장: 시민건강국장/서울대학교병원 신상도)
- 주요 역할
  - 서울시 응급의료 정책 개발 등 효과성 평가를 위한 근거 제공
  - 응급의료사업 방향 수립 및 기술 지원·자문 등

##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응급의료는 사고 시 현장·이송(소방)- 응급실- 전문 진료 일련의 과정 분석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완결형 응급의료전달체계 구축 필요
- 응급의료기관, 소방, 지자체 등 다기관 응급의료 정책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 전문가의 지원 필요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 운영	장산재활 시설 운영보조	민간이전 (307)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10)	19,704,168	-	70,000	19,634,168
	지역보건 의료기능 강화	서울시 응급의료 체계 구축		민간경상 사업보조 (02)	100,000	70,000	-	170,000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 박유미 (☎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 민경일 (☎7536) 담당 : 위지영 (☎7543)

## 2.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관련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시장의 책무)
- '19년 서울심리지원센터 운영 계획(보건의료정책과-13091호, '19.4.22)

### □ 사업개요

- 사업명 : 심리상담서비스 인식개선 캠페인 공익광고 용역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심리상담서비스 공익광고 기획 및 제작
  - 효율적 매체를 활용한 광고 집행

###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우울, 불안 등 사전예방과 조기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심리상담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이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이러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고 심리상담 및 정신건강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필요시 심리상담 등 적극적 치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심리상담 공익광고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단위 : 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운영	서울심리지원 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317,563	-	110,000	1,207,563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	110,000	-	110,000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 박유미 (☎2133-7505) 정신건강TF팀장 : 김승혜 (☎7551) 담당 : 민영란 (☎7549)

### 3.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예산 전용 보고

#### 사업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정신건강상 문제의 조기발견.)
- '19년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추진계획(보건의료정책과-5886,'19.2.20.)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01~ 12.31.
- 사업대상: 만19세 이상 서울시민(자치구 조례 근거)
- 사업내용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자치구 ↔ 정신의료기관)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검사 및 평가와 상담(3회/연간)
    - 검진비용 최대 8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1회차 4만원, 2~3회차 각2만원)
    - 유소견자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사업 홍보(서울시, 자치구)

#### 목표대비/추진실적(9월 기준)

- 1,346명/1,540명(114% 초과 달성), 참여의료기관: 170개원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사업실적 증가로 자치구 추가 검진비 요구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공공보건의료분야 대신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보건 시설 운영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대비 (201-01)	80,000	-	20,000	60,000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70,000	20,000	-	90,000

작성자 | 보건의료정책과장 : 박유미 (☎2133-7505) 정신건강TF팀장 : 김승혜 (☎7551) 담당 : 최해옥 (☎7548)

## 4.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예산 전용 보고

### 사업근거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서울특별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

### 사업개요

- 과업명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과업내용
  - 웰다잉관련 국·내외 주요현황 및 실태조사
  -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 컨설팅 및 추진방향 제시
  - 생애주기별 표준교육 및 유족 치유프로그램 관련 자료수집·조사·분석
  -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프로그램 자료수집·조사·분석
  - 지역사회기반 웰다잉 문화조성사업 효과성 평가

### 소요예산 : 금50,000천원(부가세포함)

### 예산전용 사유

- 자치구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서울시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의 실태조사 및 인식개선 방안 등 마련을 위한 용역 추진
- 세부내역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시민건강 수준향상	건강생활 기반조성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라비 (201-01)	30,000	30,000	-	60,000
			자치단체등이 전(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08-01)	360,000	-	30,000	330,000

## 5.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에 관한 조례」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변경 승인(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사회보장조정과-2035호, '19. 5.20.)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시행계획(질병관리과-11448,'19.5.23.)

### □ 사업개요

- 시행일: 2019. 6. 1. ※6.1. 이후 입원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부터 적용
- 대 상: 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근로 사업소득자
- 지원금액: 1일 81,180원('19년 서울특별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연간 최대 11일(입원 10일,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19년 6월 1일 사업 시행에 따라 사업 초기 홍보 부족 등으로 유급병가 지원 신청자가 저조하여 1:1 맞춤형 홍보가 필요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의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역가입자 중 입원·검진자 13만 5천명에게 서울시가 일괄 안내문을 발송함에 미 편성된 공공운영비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서 전용하게 됨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활보건 관리향상	감염병예방 및 시민건강관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 (308)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01)	6,140,214		54,000	6,086,214
			일 반 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	54,000		54,000

※ 산출기초: 430원(접착형,양면/통)\*135,443건=53,919,670원(수수료감액 4,320천원)

작성자 | 질병관리과장 : 박봉규 (☎2133-7660) | 직업건강팀장 : 김규대 (☎7611) | 담당 : 정상임 (☎7613)

## 6.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4항 제4호
- 2019년 감염병관리사업지침 (질병관리본부)
- '19년 감염병예방관리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 통보(질본 감염병총괄과 3972, 19.10.14.)

###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입원치료(격리)는 감염병이 타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회적 으로 취하는 조치로 입원치료와 관련된 비용은 시·도와 국가가 공동 부담
- 사업기간: '19.01~ 12.31.
- 사업대상: 1군 등 급성감염병환자, 메르스 의심환자 등
- 사업내용: 장티푸스, A형간염, 메르스 등 감염병(의심)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 □ 추진실적(격리치료비 지원 현황)

('19.11.20기준, 단위: 건, 천원)

년도별	구분 계	1군					4군		에볼라
		콜레라	장티푸스	파티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메르스	
'18년	57.0		19	2	6	12		17	1
	19,669,610		14,081,910	518,060	1,367,630	1,278,200		2,341,550	82,260
'19년	146	1	6	2	4	6	52	75	
	41,020,650	745,170	3,932,140	1,032,010	423,610	2,395,910	21,501,810	10,990,000	

###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19년 A형간염 등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예산부족으로 격리치료를 받은 많은 환자들이 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질병관리본부에서 긴급하게 국고보조금(22,000천원)이 추가 교부 됨에 따라 시비 보조금 매칭을 위해 전용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생활보건관리 항상	감염병예방 및 사건건강관리	MERS 산중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재료비 (206)	재료비 (01)	537,000	-	22,000	515,000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차차단체등 이전 (308)	차차단체경상보조금 (01)	(×21,700) 43,400	22,000	-	(×21,700) 65,400

작성자 | 질병관리과장 : 박봉규 (☎2133-7660) 감염병관리팀장 : 김해숙 (☎7686) 담당 : 함현진 (☎7687)

## 7.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승강기시설 안전 관리법 제17조,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수도법 제33조, 전기사업법 제65조

### □ 사업개요

- 사업기간: '19.01~ 12.31.
- 사업내용
  - 청사 냉·난방 설비, 공조설비, 급·배수 위생설비, 방범·방재설비, 기타 기전설비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 시행, 폐기물 위탁처리, 청소 및 조경·녹지 관리 내·외부 미화관리 기간제 근로 시행
  - 설비 법정검사 이행, 청사 외벽보수, 노후설비 교체 등 일반 유지관리

### □ 예산전용 사유

- 2019년 예산편성시 기간제근로자(촉탁직) 퇴직금 예상액 미반영
- 2018.12.31.자로 정년퇴직한 기간제근로자(촉탁직2명) 퇴직금 지급 (20,332천원)으로 인한 소요예산액 증가로 인한 부족액 발생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보건환경연구원 효율적운영	연구 및 전문훈련 강화	청사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10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01-04)	143,235	16,000	-	159,235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1,616,413	-	16,000	1,600,413



## 8.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예산 전용 및 변경 보고

### □ 사업근거

- 20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 알림  
(노동정책담당관-13077, 2018. 12. 17.)
- 복지수당 각 사업부서별 편성 지침(일자리정책과-10330, 2016. 7. 20.)

### □ 사업개요

- 규 모 : 청소분야 촉탁직 4명, 경비분야 촉탁직 1명
- 기 간 : '19. 1. 1. ~ '19. 12. 31.(1년)
- 내 용 : 근로자 임금 지급 및 복리후생 지원

### □ 예산 전용 및 변경 사유

- '18년 촉탁계약직 임금협상이 회계연도말인 '18.12.17.자로 결정되어 '18년 임금 상승분을 '19년도 예산으로 소급지급함에 따라 예산부족 발생함
- 특히, 당초 예산편성 시 기준인 '17년 임금상승률(평균 3%) 대비 '18년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상승률(평균 7%)이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었고,
- 위생수당(월 3만원)과 특수지근무수당(월 3만원) 신설로 시간외 근무수당 단가 및 연가보상비 등도 동반상승함에 따라 예산 전용 및 변경이 불가피함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전문특화된 의료서비스 제고	어린이병원 진료수준 제고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504,268	-	17,000	487,268
		어린이병원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48,302	-	23,000	25,302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인건비 (101)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01-04)	164,653	40,000	-	204,653

작 성 자

원무과장 : 임재선 ☎ 570-8105 시설관리팀장 : 이상욱 ☎ 8121 담당:권정원 ☎ 8089

## 9.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사무관리비) 예산 전용 보고

### 사업근거

-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계획(원무과-16759, '19.11.27.)

### 사업개요

- 사업명 :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및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1호
- 과업내용
  - 병원시설 노후화에 따른 이용시민의 불만족, 증가하는 정신건강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청사시설 전반에 대한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01년 준공 이후 건물 및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 되어 낙후된 병원 환경과 시설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필요
- 동일 단위사업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연·월·일별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307)	의료 및 구료비 (307-01)	3,408,961	-	36,234	3,372,727
		은평병원 청사 시설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7,400	36,234	-	53,634

# 10. 은평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시설비) 예산 전용 보고

## □ 사업근거

- 병원청사 노후(누수)난방배관 정비 계획(원무과-15025,'19.10.24.)

## □ 사업개요

- 사업명 : 병원청사 노후(누수)난방배관 정비 공사
- 공사기간 : ~'19.12.31.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를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공사금액이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업체 중에서 최저가의 견적서를 제출한 업체와 계약)
- 과업내용
  - 노후화된 난방배관(공급관 및 가지관) 교체 및 정비 공사
  - 52병동 바닥 난방 배관 일괄 교체 등

## □ 예산전용 사유 및 추진

- 난방배관 노후화로 누수 및 고장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동절기 병원 청사의 정상적 난방가동을 위해 난방배관 보수공사가 긴급히 필요
- 동일 단위사업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전용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액		승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연구활성화 및 시설환경 개선으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은평병원 고객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민간이전 (307)	의료및구료비 (307-01)	3,372,727	-	20,000	3,352,727
		은평병원 청사 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및부대비 (401)	시설비 (401-01)	1,205,072	20,000	-	1,225,072

# 11. 은평구 보조금 반환을 위한 예비비 지출 보고(은평병원)

## □ 사용근거

-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서울행정법원 제6부, 2018구합73577)
- 조정권고 수용방침(법률지원담당관-8456, '19.05.20)
- 행정소송 조정권고안 수용에 따른 은평구 보조금 반환 계획(원무과-13381호,'19.9.23.)
- 예비비 사용승인(예산담당관-12242호,'19.10.06.)

## □ 행정소송 등 경위

- '08. 2.29 은평구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위·수탁협약체결
- '17. 3.17. 횡령사건 수사 및 고발조치(보건지소→은평경찰서)  
※ 횡령액 322,011,293원, 용도외 사용 4,774,810원
- '17. 8. 8. 은평구 보조금 반환명령(사비및구비각50%로구성된금327백만원)
- '17.11. 7.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원고:은평병원, 피고: 은평구청)
- '18. 6.11. 행정심판 청구 각하 재결  
※ 재결서 요지 : 은평병원은 법인격 없는 영조물로 서울시가 쟁송의 당사자가 되어야 함
- '18. 8. 3. 보조금 반환처분 무효확인 행정소송 제기(원고:서울시청, 피고: 은평구청)
- '19. 5.16. 재판부의 조정권고 결정  
※ 조정권고안 요지 : 원고는 피고에게 한 시비보조금 반환명령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구비 보조금을 반환하며, 곧바로 이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 □ 집행액 : 금143,289천원

## □ 예비비 집행 사유

-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市の 수용방침에 따라 은평구 구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예비비를 활용하여 배상금으로 편성 집행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인요청액		승인후 잔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일반예산 (예비비)	예비비 (일반회계)	예비비	예비비 (801)	일반예비비 (801-01)	87,930,292	-	△143,289	87,787,003
연말정산 및 시정환경 개선을 위한 진료서비스 증진	은평병원 운영	고객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배상금 (305)	배상금 등 (305)	-	143,289	-	143,289

작성 자    원무과장 : 김종환 ☎300-8010    서무팀장 : 권미경 ☎8011    담당 : 이성복 ☎8017

## 12.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보고

### □ 보고근거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정관)제3항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9. 5. 16.>

### □ 개정내용

-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19. 3.28.)에 따른 용어 개정
  - 제9조(임원의 임기)제1항 내 “근로자 이사”를 “노동자 이사”로 용어 개정
- 정관 내 기본재산에 대한 별지 신설
  -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정관 표준안(공기업담당관-12997호, ’19.11. 6.)에 따라 정관 내 재단 기본재산에 대한 목록 기재
- ‘20년 인력증원에 따른 정원표(별표2) 개정
  - 정관 제22조(조직 및 정원)에 명시된 정원(별표2)을 ’20년 인력증원에 대한 예산 반영에 따라 “현행 30명에서 38명으로 개정”
  - (현행) 연구직 23명, 일반직 6명 → (개정) 연구직 30명, 일반직 7명

### □ 향후계획(안)

- 시의회(보건복지위원회) 정관 개정(안) 사전 보고 : ‘19.12월
- 이사회 정관 개정(안) 의결 : ‘19.12월
- 서울특별시시장 승인 및 보건복지부 허가 : ‘19.12 ~ ‘20. 1월
- 정관 개정(안) 시행 : ‘20. 1월

붙임. 공공보건의료재단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정관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b>근로자 이사</b>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p>	<p>제9조(임원의 임기) ①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b>노동자 이사</b>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법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 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하여야 한다.</p>																																																																																
<p>〈별지 1〉 삭제</p>	<p>〈신설〉 〈별지 1〉 기본재산 목록 (단위 : 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출연자</th> <th>금액</th> <th>비고</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td> <td>700,000,000</td> <td></td> </tr> <tr> <td>현금</td> <td>서울특별시</td> <td>700,000,000</td> <td>설립출연</td> </tr> </tbody> </table>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7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700,000,000	설립출연																																																																				
구분	출연자	금액	비고																																																																														
계		700,000,000																																																																															
현금	서울특별시	700,000,000	설립출연																																																																														
<p>별표2.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임원</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b>30</b></td> <td>1</td> <td>4</td> <td><b>4</b></td> <td>5</td> <td>8</td> <td>8</td> </tr> <tr> <td>임원</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td> <td><b>6</b></td> <td>-</td> <td>1</td> <td>1</td> <td>1</td> <td>2</td> <td><b>1</b></td> </tr> <tr> <td>연구직</td> <td><b>23</b></td> <td>-</td> <td>3</td> <td><b>3</b></td> <td>4</td> <td>6</td> <td><b>7</b></td> </tr> </tbody> </table>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b>30</b>	1	4	<b>4</b>	5	8	8	임원	1	1	-	-	-	-	-	일반직	<b>6</b>	-	1	1	1	2	<b>1</b>	연구직	<b>23</b>	-	3	<b>3</b>	4	6	<b>7</b>	<p>별표2.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구분</th> <th>계</th> <th>임원</th> <th>1급</th> <th>2급</th> <th>3급</th> <th>4급</th> <th>5급</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b>38</b></td> <td>1</td> <td>4</td> <td>5</td> <td>8</td> <td><b>9</b></td> <td><b>11</b></td> </tr> <tr> <td>임원</td> <td>1</td> <td>1</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일반직</td> <td><b>7</b></td> <td>-</td> <td>1</td> <td>1</td> <td>1</td> <td>2</td> <td><b>2</b></td> </tr> <tr> <td>연구직</td> <td><b>30</b></td> <td>-</td> <td>3</td> <td><b>4</b></td> <td><b>7</b></td> <td><b>7</b></td> <td><b>9</b></td> </tr> </tbody> </table>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b>38</b>	1	4	5	8	<b>9</b>	<b>11</b>	임원	1	1	-	-	-	-	-	일반직	<b>7</b>	-	1	1	1	2	<b>2</b>	연구직	<b>30</b>	-	3	<b>4</b>	<b>7</b>	<b>7</b>	<b>9</b>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b>30</b>	1	4	<b>4</b>	5	8	8																																																																										
임원	1	1	-	-	-	-	-																																																																										
일반직	<b>6</b>	-	1	1	1	2	<b>1</b>																																																																										
연구직	<b>23</b>	-	3	<b>3</b>	4	6	<b>7</b>																																																																										
구분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	5급																																																																										
계	<b>38</b>	1	4	5	8	<b>9</b>	<b>11</b>																																																																										
임원	1	1	-	-	-	-	-																																																																										
일반직	<b>7</b>	-	1	1	1	2	<b>2</b>																																																																										
연구직	<b>30</b>	-	3	<b>4</b>	<b>7</b>	<b>7</b>	<b>9</b>																																																																										